



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

안녕

함께알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(1) 안내

1. 자원봉사로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(보건복지부, 22.4.15)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의 일상방역기준 마련을 위한 '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(1)'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■ 개 요

○ 추진배경

-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, 행사·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

○ 시행기간 : 2022. 4. 18(월)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

○ 주요 내용

-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
-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
-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

붙임.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(1) 1부. 끝.

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



수신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장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, 행정안전부(민간협력과장)

04/18

담당 임지영 팀장 김선용 사무처장 윤순화 센터장 권미영

협조자

시행 중앙센터 2022-1375 (2022.4.18.)

접수

우 04519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

/ www.v1365.or.kr

전화 02-2129-7509

전송 02-711-0887

/ kvc@v1365.or.kr

/ 공개
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 [I]
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(보건복지부, 2022.4.15.)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속 생활 방역 기준 마련

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주요 내용

- 운영시간, 사적모임, 행사·집회 인원제한 등 모든 조치 해제
 - (시행기간) 22. 4. 18(월)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
 -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.26(월)부터 해제
 -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

○ 참고 : 기존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

- (영업시간) **24시** (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)
- (사적모임) **10인**
- (행사·집회) 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**299인**까지 허용
- (기타)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**70%**, 실내 취식금지 등

○ (마스크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기준 유지

-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, 집회 · 공연 ·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

○ (고위험군보호) 감염취약계층 집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유지

- 요양병원·시설의 입·종사자 선제 검사,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 유지

2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리 지침

- 거리두기해제에 따른 일상 속 감염 차단 중요성 강화로
자원봉사활동 중 생활방역수칙 마련을 통한 안전 보장

○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

【 자원봉사자 방역 6대 수칙 (권고) 】 *現 생활방역 세부수칙(질병청, 4.25.(월) 개정 예정)

-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-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(특히,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-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(기침은 옷 소매에)
-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1일 1회 이상 소독
- ⑤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
-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,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

○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

- 실내 프로그램 운영 시, 환기 기준 마련
 - . (예) 50분 활동 후, 10분 간 휴식 및 환기
- 활동 전·후 자원봉사자 열체크와 손소독
 - . 활동 전, 정상 체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 활동 참여 제외
- 활동 중 취식 시, 방역 수칙 준수
 - . 2m 거리 두기 유지와 대화 자제
 - . 취식 전후 실내 환기(10분 이상)와 소독 필수
 - .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
- 자원봉사자 코로나19 예방 접종(3차 이상) 권고
 - * 특히, 60세 이상 자원봉사자의 경우 4차 접종 권고
- (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활동 시)
 - . 3차 접종자만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이용.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
 - .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식사 허용
- 요양병원·시설의 방역 조치 유지에 따라 해당 시설 자원봉사활동 제한

□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

- 실내·외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